

# 서울신학대학교 대학 경건훈련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본 대학교 학칙 제1조 및 제2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경건 훈련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건훈련 내용)** 전조의 경건훈련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수행함으로 뜻한다.

## ① 채플 참석

1. 본 대학교의 재학생은 매주 정규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단, 목회 하고 있는 목사는 자율로 하며, 단독 목회 중인 전도사는 주 1회 자율, 주 1회 의무참석 해야 한다.  
(제출서류 - 목회하고 있는 목사 중 처음 제출자: 목사안수증, 후보. 그 다음 학기부터는 매 학기 후보 제출  
단독 목회 중인 전도사 중 처음 제출자 : 승인증명서, 재직증명서, 후보. 그 다음 학기부터는 매 학기 후보 제출)
2. 모든 재학생은 채플 참석시 경건훈련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출석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
3. 채플에 불참한 자에게는 감점제를 실시하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로 채플에 불참하게 될 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2부대 교회 목회자의 배우자 채플 참석  
2부대 재학생 중 개 교회 수요예배 출석이 가능한 교회 목회자(목사, 전임전도사)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개 교회 수요예배로 한 학기 채플을 인정 할 수 있다(매 학기 교역처에 담임목회자의 청원서 제출).

## ② 특별집회 참석

1. 본 대학교 재학생은 본 대학이 수시로 실시하는 신앙수련회 및 기타 집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단, 목회 하고 있는 목사는 자율적으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특별집회에 불참하게 될 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개인생활

본 대학교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생활태도를 지녀야 한다.

1.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2. 공손한 언어와 절제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3. 신학생으로서의 규범을 지키며 품위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4. 상기 사항에 위배된 자는 경건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조 (평가 및 벌칙)** ① 위 제 2조 각 항의 수행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계속하여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는 결석회수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결석회수에 따른 제재조치

1. 1부대 채플 평가 및 벌칙(한 학기)

결석회수	결 과	제 재 조 치
------	-----	---------

4	경 고	출석상황 통보
6	경건훈련 불 합 격	1) 본인에게 통보와 함께 차후 장학금 수혜자격상실 또는 지급 중지 2) 학생회 임원 및 학생자율단체(동아리) 임원자격 상실 3) 차기 학기 생활관 입사 불허

2. 2부대 채플 평가 및 벌칙(한 학기)

결석회수	결 과	제 재 조 치
2	경 고	출석상황 통보
3	경건훈련 불 합 격	1) 본인에게 통보와 함께 차후 장학금 수혜자격상실 또는 지급 중지 2) 학생회 임원 및 학생자율단체(동아리) 임원자격 상실 3) 차기 학기 생활관 입사 불허

■ 1부대, 2부대 공통사항

\* 3회를 지각할 경우는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한 학기 결석회수가 전체의 1/2이하로 불합격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교역처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합격처리 받을 수 있다.

3. 특별집회(신앙수련회)평가 및 벌칙(한 학기)

결석회수	결 과	제 재 조 치(1,2부대 공통)
1부대-2회 2부대-1회	불합격 불합격	1) 본인에게 통보와 함께 차후 장학금 수혜자격상실 또는 지급 중지 2) 학생회 임원 및 학생자율단체(동아리) 임원자격 상실 3) 차기 학기 생활관 입사 불허

가. 특별집회(신앙수련회) 회수는 1부대 6회, 2부대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집회 수가 달라질 경우 사전공지를 한다.

나. 3회 지각 할 경우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부정행위 처벌

1. 경건훈련 카드 제출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해당학기의 경건훈련(채플, 신앙수련회 및 기타집회)을 무효 처리 한다.
2. 위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은 경건훈련위원회에 회부한다.
3. 부정행위 의뢰자와 이를 수락하여 행한자 모두 동등하게 처벌한다.

**제4조** (공결)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대신 할 수 있는 공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의 사망시
2. 병무신체검사시
3. 예비군 훈련시
4. 학교가 허락하는 특별행사 및 교육실습 참가시
5. 병원이 증명하는 병환시
6. 천재지변시
7. 기타 면담을 통해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5조** (경건훈련 이수과정) <개정 2014. 1. 28.>

1. 재학생 경건훈련

본 대학교 재학생은 의무적으로 경건훈련(채플, 신앙수련회 및 기타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단, 4학년 2학기에는 자율참석이며, 재학 중 경건훈련 불합격자는 청원서 제출 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 편입생 경건훈련

편입한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경건훈련(채플, 신앙수련회 및 기타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단, 4학년 2학기에는 자율참석이며, 재학 중 경건훈련 불합격자는 청원서 제출 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3. 재입학생 경건훈련

재입학은 학칙 제 17조에 적용된다. 재입학한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경건훈련(채플, 신앙수련회 및 기타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단, 4학년 2학기에는 자율참석이며, 재학 중 경건훈련 불합격자는 청원서 제출 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4. 재학생 교회생활<개정 2015.09.01.>

본교 재학중인 학생은 개교회에 출석하여 봉사하도록 권고한다. 단,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학생과 이 두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매학기 출석교회 목회자로부터 교회봉사생활평가서를 받아 담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확인, 평가 받아야 한다.

**제6조** (지침의 개정) 본 지침은 경건훈련위원회 제청과 교무위원회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7조** (경과조치)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역처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